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442
----------	-----

제출년월일 : 1998.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환경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시민,사업자,학교,언론,단체,시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및 책무·역할분담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 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환경백서로 작성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다.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원칙을 정함(안 제13조)
- 마.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19조)
- 바.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규정함(안 제18조·제20조)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시민, 사업자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시책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정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 한다.

제7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2장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때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수립 지침)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와 그 외의 공공시설,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19조(파주시환경정보전자문위원회) ① 환경정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환경
보전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민참여등)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
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
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